

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 사업단 운영 규정

제정 2025.09.29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RISE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컨소시엄 구성) RISE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내 사·군, 대학 및 전문대학, 기업체 및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컨소시엄에 관한 사항은 각 기관간의 협약으로 정한다.

제3조(업무)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사업 수행결과의 보고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
4. 그 밖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
제4조(사업단장)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 업무를 총괄하며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교무위원으로 보한다.

② 사업단장의 임기는 총 사업 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사업조직 구성) ① 사업단은 총장직속으로 설치 운영하며, 사업단장이 사업을 총괄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.

②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행
2.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
3. 사업실적 및 성과의 홍보 확산
4. 성과지표 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
5. 자체운영 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
6.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보관
7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③ 사업추진팀은 사무분장규정에 의거하여 사업 수행을 위한 영역에 해당되는 부서를 중심으로 구성한다.

④ 사업추진팀은 사업의 공정성·투명성을 위하여 운영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며, 회계 관리와 더불어 전반적인 사업을 관리·감독한다. 조직구성과 담당 역할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

정한다.

⑤ 사업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원과 전담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6조(사업추진위원회) ① 사업 계획 및 예산 집행 등 주요사항 심의와 사업 운영 및 자문 역할 수행을 위해 사업추진위원회(이하 “추진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추진위원회는 총장, 사업단장,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,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한다.

④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심의
2. 사업 추진결과 및 운영방안 심의
3. 그 밖의 사업 관련 세부 사항 심의

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성과 평가와 환류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“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평가위원회는 성과관리센터장, 교육혁신센터장,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4인 내외의 위원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성과관리센터장이 되고,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정한다.

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비 집행 현황 점검
2. 사업 추진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
3. 사업의 성과지표 평가 및 심의, 환류 방안 수립
4. 그 밖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사항

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연 2회 이상 개최한다.

제8조(사업운영위원회) 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사업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및 스쿨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한다.

③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고,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정한다.

④ 사업운영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세부사업 기획 및 심의
2. 세부사업 추진 현황 점검 및 조정
3. 사업참여자 및 대상 선정
4.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9조(지산학협력 거버넌스 협의체) ① 지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, 산업체,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지산학협력 거버넌스 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구축한다.

② 협의체는 각 기관을 대표하는 위원을 추천받아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정보 공유
2.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 공유방안 협의
3. 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의견 조율
4. 그 밖의 사업 협력을 위한 주요사항 논의

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지침은 대학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25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.